

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선거시행세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본 시행세칙은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의 정.부회장 선거와 이사, 감사, 이사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선거 또는 투표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선거관리위원회)

- ① 본회 정관 제 9 장 제 28 조에 의거, 3 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해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‘선관위’)를 구성하며 위원회 자체 결정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선거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.
- ③ 선관위는 필요에 따라 행정, 기획, 재정 등으로 선거업무를 분장해 관리할 수 있으며 담당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선관위원의 결원 시 이사장단은 이사 중에서 충원한다.
- ⑤ 선거업무 종사 보조 인력이 필요할 시 선관위원장은 이사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이사장단은 이사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- ⑥ (법적 보호)선관위 및 선관위원이 정당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시 본회가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책임을 진다.

제 2 장 정.부회장 선거

제 3 조 (입후보 등록)선관위는 정.부회장 입후보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
- ① (등록기간 공고)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5 일 이전에 등록기간을 공고하고 최소 10 일간의 등록기간을 두며 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험 홍보매체 (실험뉴스, 실험웹사이트)와 동포 일간지에 공고한다.
- ② (등록절차)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기한 내에 회장 후보 1 인과 부회장 후보 1 인으로 구성된 공동단일팀을 선관위에 등록하며 등록시 다음 각호의 본회 소정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1. 등록신청서 1 부
2. 학력 증명서 각 1 부
3. 이력서 각 1 부 (여권용 사진 각 1매 첨부)
4.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각 1 부

5. 추천서 1부 (본회의 정회원 20명 이상 서명)
 6. 기탁금 CD\$ 3,000.00
 7. 서약서 1부
 8. 캐나다 정부발급 신원조회서(criminal record) 각 1부
 9. 선거운동원 명부 1부
 - a) 선거 사무장 1인
 - b) 선거 사무원 5인 이하
 - c) 투.개표 참관인 10인 이하
- ③ (등록 마감)등록 마감은 등록 기한 최종일 오후 4시로 한다.

제 4 조 (등록 조치)

- ① (등록필증 발급)선관위는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후보팀에게 등록필증을 발급하며 등록필증 발급 후 등록된 서류와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- ② (기탁금 처리)기탁금은 후보 등록필증 발급 후 즉시 본회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. 단, 기탁금은 후보자가 경선의 경우 유효투표의 10% 이상을 득하거나 단독후보의 경우 인준지지 10% 이상을 득하면 후보에게 전액 반환된다.
- ③ (후보자 공고)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등록순으로 기호를 부여하고 입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실협 홍보매체(실협뉴스, 실협 웹사이트) 또는 동포일간지에 공고해야 한다.

제 5 조 (피선거권 제한)

- ① 본회 정관 제 2장 제 4조 제 1항, 제 5조,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회원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.
- ② 캐나다 내에서 법원의 최종판결로 금치산, 준금치산, 파산선고, 6개월 이상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.
- ③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본회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.

제 6 조 (선거운동)등록마감일에서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- ① **(언론을 통한 홍보)** 실험홍보매체(실험뉴스, 실험웹사이트)와 동포언론을 통해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. 다만 동포언론은 매체 총합 3회, 실험홍보매체는 종류별 각 3회 이내로 횟수에 제한을 두며 상대후보에 관한 비방성 내용은 다루지 못한다.
- ② **(정견발표)** 경쟁후보팀 합동으로 본부협회에서 1회에 한해 정견발표를 개최하며 동 장면을 동영상 공유 사이트(예, 유튜브)에 소개한다. 다만, 합동정견발표 외에 개별팀 또는 경쟁팀 합동의 토론회는 선관위와 선거사무장간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개최될 수 있다.

제 7조 (이의신청)

- ① **(서면 이의신청)** 선거운동 기간과 투.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발생할 경우, 개표결과 선언 이전에 이의 사항을 서면으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.
- ② **(선관위 확정 과반수)** 이의 신청은 선거사무장 명의로 제기하며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반수로 의결한다.
- ③ **(개표결과 발표후 이의 제기 금지)** 선관위의 개표결과 선언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.

제 8조 (선거)

- ① **(선거를 위한 임시총회)** 본회 정관 제 9장 제 26조에 의거,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회기말 종료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선거를 실시한다.
- ② **(우편투표)** 총회 당일 현장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해 우편투표를 병행한다. 따라서 투표참가를 원하는 유권자는 총회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중 택일한다.
- ③ **(사서함)** 우편투표의 경우, 기표용지는 선관위가 정한 사서함으로 도달되도록 해야 하며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일 전날 오후 5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된다.
- ④ **(의장)**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의장은 현직 회장이 맡는다. 다만, 현직 회장이 입후보자인 경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- ⑤ **(총회성립)**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우편투표참가자를 포함해 총투표참가자수가 총유권자수의 35% 이상이어야 성립된다.
- ⑥ **(당선공고)**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총회 의장은 이를 실험홍보매체와 동포언론에 즉각 발표한다.

- ⑦ (기표용지처리)기표용지는 당선 확정일로부터 30 일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처리한다.

제 9 조 (재검표 및 순위확정)

- ① (재검표)최다 득표가 동수일 경우 개표 현장에서 즉각 재검표한다.
- ② (순위 결정기준)재검표에서도 동수일 경우 회장 입후보자의 본회 정회원 자격유지 기간이 일자까지 셈하여 많은 순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동일하면 연령이 낮은 순으로 정한다.
- ③ 상위득표자들의 득표차이가 전체투표수의 1% 이내일 경우 후보단으로부터 재검표 의사표시가 있으면 재검표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입후보자가 없는 경우)

- ① (2 차 공고)후보 등록 마감시한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마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근무일 5 일 안에 1 차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2 차 공고한다.
- ② (총회 인준)2 차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2 주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, 회장 후보를 선출해 정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③ (인준기준)총회 인준은 재석인원 과반수로 하며 인준이 부결된 경우 당일 총회에서 결의된 방법으로 회장단을 선출한다.

제 11 조 (2 차공고 후 복수후보 등록시)

2 차공고 후 복수후보가 등록한 경우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지 않고 총회 당일 현장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제 12 조 (단독후보의 경우)

- ① (과반수 인준)1차공고 또는 2차 공고 후 단독후보인 경우 선거실시없이 해당 연도 정기총회에서 재석인원 과반수 찬성의 인준을 받아 당선을 확정한다.
- ② (인준부결)인준이 부결된 경우 2주 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, 회장 후보를 선출해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③ (이사장 직무대행)이사장은 인준에 이르는 업무공백기간, 회장직위와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④ (경선중 단독후보)등록 후 경선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중 상대 후보의 사

퇴나 유고 등으로 인해 단독후보가 된 경우에는 투표를 계속 진행하며 이는 인준투표의 성격을 가진다.

- ⑤ (인준기준)위④의 경우, 단독후보에 대한 인준투표는 투표 참가자 전체 투표수의 35%를 득함으로 인준된 것으로 한다.

제 13 조 (선거권)

- ① (유권자 자격)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자격은 본회 정관 제 4 조 및 제 5 조에 의거, 정회원으로서 과년도를 포함해 선거실시 해당연도 회비가 완납된 자에 한한다.
- ② (1인 1투표 원칙)모든 유권자에게는 평등하게 1표만 주어지며 동일인 명의로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해도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한다.
- ③ (복수명의)회원 등록 서류상의 업소명의가 복수인 경우에도 1차 명의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며 1차 명의자가 투표권을 포기한 경우, 타 공동명의자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.
- ④ (신분증명)총회 현장 투표의 경우 우편투표를 위해 기 발송한 유권자카드와 투표용지를 훼손되지 않은 원본 상태로 투표현장에서 제시해야하며 사진이 부착된 캐나다 정부발행 신분증 1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.
- ⑤ (대리투표 불가)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발견 즉시 유권자의 투표권은 무효처리된다.

제 3 장 이사.감사 선거

제 14 조 (선거일) 본회 정관 제 7 장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해 총회에서 선출하는 6 인의 이사와 제 8 장 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해 총회에서 선출하는 일반 감사 2 인은 매 2 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15 조 (입후보 등록)

- ① 이사 및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가 마련한 소정의 등록 신청서(사진 부착)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 매를 제출해야 한다.
- ②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0 일 간의 등록 기간을 설정하며 선관위원장은 등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험 홍보물(실험뉴스, 실험웹사이트)에 공고한다.

- ③ 후보 등록 시 소속 지구협의회 및 소속 지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본인이 임의로 등록을 할 수 있다.

제 16 조 (투표)

- ① 각 지구협의회별로 배정된 인원을 충족시켰을 경우 과반수 인준으로 통과시키며 후보자 초과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각 지구협의회별로 배정된 인원을 선출한다.
- ② 후보자 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총회석상에서 추천받아 인준한다.

제 17 조 (이사장 선출)

- ① (선거방법)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.
- ② (단독 후보)후보가 단독일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은 당일 이사회 재석이사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.

부칙

제 1 조 : 본 회의 정관이나 본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.

제 2 조 : 입후보자가 서약서 내용을 위반했을 시,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 3 조 :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에 관련된 사항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비(회의비, 인건비, 유류대, 소모품비 등)를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.

제 4 조 : 각 후보 및 등록된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이 과대 선전, 유언비어 등 부당한 행위로 판정되면 선관위는 해당입후보자에게 2 회까지 경고조치를 하며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당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.

1999 년 3 월 25 일 개정

2007 년 7 월 27 일 개정

2009 년 5 월 21 일 개정

2011 년 6 월 23 일 개정

2013 년 7 월 18 일 개정

2015 년 7 월 23 일 개정

2017 년 7 월 19 일 개정

2019 년 10 월 3 일 개정

2023 년 8 월 16 일 개정